소규모 펀드공시
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[기준일 : 2026.10.31.]

• 소규모펀드 여부 공시 :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 93 조제 3 항제 4 호에 해당하는 경우

회사명	펀드명 1 (운용펀드)	펀드명 2 (투자자펀드)	펀드코드 (운용펀드)	펀드코드 (투자자펀드)	발생일자	비율산정대상
대신자산운용	해당사항없음					

• 소규모펀드(1 개월)여부 공시 :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 93 조제 3 항제 5 호에 해당하는 경우

회사명	펀드명 1 (운용펀드)	펀드명 2 (투자자펀드)	펀드코드 (운용펀드)	펀드코드 (투자자펀드)	발생일자	비율산정대상
대신자산운용	해당사항없음					

※ 상기 기재된 비율산정대상은 대신자산운용㈜의 소규모 펀드 비율 계산시 산정대상 여부를 구분한 것입니다.

※ 투자신탁의 경우 법 제 192 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• [소규모펀드 해소 공시]

회사명	펀드코드 (운용펀드기준)	펀드명 (운용펀드기준)	효력발생일 (등록일)	최초설정일	소규모펀드가된시점	정리방법	정리일자
대신자산운용	해당사항없음						

※ 상기 소규모펀드 해소 현황은 대신자산운용㈜이 공시한 소규모펀드가 해지(클래스 전부환매 포함), 원본액 50 억초과, 합병 등의 사유로 인해 소규모펀드에서 해소된 경우에 해당합니다.

• [소규모펀드 해소 공시 (세부)]

회사명	모자형구조 해당여부	펀드명 1 (운용펀드)	펀드명 2 (투자자펀드)	펀드코드 (운용펀드)	펀드코드 (투자자펀드)	근거법률	정리일자
대신자산운용	해당사항없음						

※ 상기 소규모펀드 해소 현황은 대신자산운용㈜이 공시한 소규모펀드가 해지(클래스 전부환매 포함), 원본액 50 억초과, 합병 등의 사유로 인해 소규모펀드에서 해소된 경우에 해당합니다.